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5446

발의연월일 : 2023. 11. 15.

발 의 자 : 박주민・조오섭・강준현
최혜영・박영순・우원식
진성준・박상혁・박홍근
강민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 삭감을 방지하고 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적정임금제'에 관한 규정이 없음.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국가사업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근로자의 기본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적정임금을 산정・고시하도록 하고 하도급거래 과정에서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한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대금 지급 거절, 계약 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 신설).

법률 제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5(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6부터 제5조의9까지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라 한다)에게 제5조의7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6(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의7(적정임금의 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직종 및 기능의 임금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의 하나의 값으로 적정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에 근로자 임금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적정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8(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3. 계약상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3호에 준하여 하도급거래 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5.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6.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제5조의9(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월(前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나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

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임금의 지급 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에 따른 적정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급계약의 적정임금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 및 제27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5(도급계약에 관한 적정임금 지급의 원칙) 도급계약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도급계약(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이라 한다)의 계약상대자는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소속 근로자(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소속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조의6부터 제5조의9까지에서 같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 및 기능의 근로자(이하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라 한다)에게 제5조의7에 따른 적정임금(이하 "적정임금"이라 한다)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6(적정임금의 지급을 위한 책무)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금액에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에 따른 노무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7(적정임금의 산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종별·기능별 적정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직종 및 기능의 임금 평균값, 중위값, 최빈값 중의 하나의 값으로 적정임금을 정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에 근로자 임금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기관·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

	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적정임금의 산정을 위한 조사·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적정임금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8(적정임금 지급조건부 도급계약의 체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그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 2.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적정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적정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

	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3. 계약상대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 금액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 등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 4. 계약상대자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를 하는 경우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제3호에 준하여 하도급거래 금액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내용 5.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도급계약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내용 6. 계약상대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계약조건을 위반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조건의 준수를 요구할 수 있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신 설>	제5조의9(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①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다른 비용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비용은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는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전용계좌(이하 “임금

	전용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받은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임금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임금비용을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임금비용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전월(前月)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

	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5항에 따른 임금의 지급내역을 확인한 결과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거나, 근로자에게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상의 노무비나 적정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 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부정당업자”라 한다)에게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하며, 그 제한 사실을 즉시 다른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① ----------.----

우 통보를 받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적정임금 적용대상 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로서 제5조의5부터 제5조의9까지에 따른 적정임금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9. (생 략)	10. (현행 제9호와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